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을 위해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운영률 제고를 위해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군무원의 승진 관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무원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무원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구체화(안 제10조의2)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및 수습근무 부대 지정, 수습근무 중단, 임용 여부 결정 시기, 보수,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 시, 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제5항)

다. 군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조항 정비(안 제18조제1항2호, 제18조제6항)

- 1) 경제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경제 시험 간 동일하게 개정
 - 2)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시험 추가합격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 라.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 공개(안 제45조)
-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되, 구체적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을 부대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
- 마. 전문군무경력관 인사관리(전직, 전보, 파견) 근거 마련(안 제126조의2, 제126조의3, 제126조의4)
-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동일 직무 분야 내 전문인력 충원 소요 발생, 긴급한 업무 대응 등 인력운영 상 필요시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시
- 바.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보완(안 제138조)
-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 추가
- 사.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조항 정비(안 별표4의2)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폐지·개정되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견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14. ~ 11.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

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

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범위”를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을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

제45조제3항 중 “조정”을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로 한다.
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전문군무경력관이 아닌 일반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이 아닌 일반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126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보직권자가 같은 부대·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

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의4(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8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로 한다.

별표 4의2의 “펠트(PELT)” 시험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전단 중 “3년이 되는”을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u> <u>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 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u> <u>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u>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 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 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u>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 ⑨ <u>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u> ⑩ <u>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2. ----- ----- ----- ----- ----- ----- 범위(선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
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
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
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
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
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
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
하 같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된 후 퇴직하는 -----

-----.

⑥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에는 미달 인원 2명을 합한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

제126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

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

<신 설>

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전문군무경력관이 아닌 일반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이 아닌 일반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126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보직권자가 같은 부대·기관

<신 설> 제1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 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 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 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 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 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 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 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의4(전문군무경력관의 파 견)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 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전문군무 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 ----- ----- ----- -----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	---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 ~ 4. (생 략)

별표4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익 (TOEIC)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토플 (TOEFL)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펠트 (PELT)	(생 략)	<u>PELT main 303점 이상</u>	<u>PELT main 224점 이상</u>	<u>PELT main 171점 이상</u>
텡스 (TEPS)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지텔프 (G-TELP)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플렉스 (FLEX)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일반
군무원에 대한 해당 직급 공개경
쟁채용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
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
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

시행령 제19조제1호-----.

1.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2. ~ 4. (현행과 같음)

별표4의2

(현행과 같음)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익 (TOEIC)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플 (TOEFL)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텡스 (TEPS)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텔프 (G-TEL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플렉스 (FLEX)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

-----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
의 -----

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이하 생략)	----- -----,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연 락 처	(02) 748 - 5295 (02) 748 - 5108